

1. 개정 이유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정 및 「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」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맞게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상위법령인 「과학기술기본법」의 일부조문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으로 제정되어 규정이 상당부분 변화함에 따라 해당 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세부조문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별첨